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58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 문진석·김홍걸·민형배

변재일 · 서영석 · 송갑석

유재갑 • 이규민 • 이상헌

이소영 • 이정문 • 이형석

조오섭 · 최강욱 · 홍성국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

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1억원"을 각각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 2. 감면비율

가.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

나.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90 미만 보유한 경우: 100분의 40

다.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의 90 이상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3"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의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u>-</u>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	3
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가
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	
소한 경우: <u>1억원</u> 에서 감	<u>1억2천만원</u>

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 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생략)

-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 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 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 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차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1억2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 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 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 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 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해당하는 자동차
- 가._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자동차

④·⑤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u>자동차</u>
 - 2. 감면비율
 - 가.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 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 만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
 - 나.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 의 70 이상 100분의 90 미 만 보유한 경우: 100분의 40
 - 다. 제1호의 자동차를 100분 의 90 이상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
 - ④·⑤ (현행과 같음)

①
,
제9호의3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u>적용한다</u>.

1.	\sim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적용하며, 제9호의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